

第54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 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1月23日(木) 14時 56分

議事日程

1. 199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承認의 件
2. 1995年度 行政事務監事 計劃書 承認의 件

附議된 案件

1. 199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承認의 件(鍾路區廳長 提出)1面
2. 1995年度 行政事務監事 計劃書 承認의 件(委員長 提出)6面

(14時56分 開議)

○議長 金憲中 오늘도 의원들 아침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副區廳長님 이하 局長님들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자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在籍議員 21명 중 出席議員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 開議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전별로 상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받고 안전별로 심의하겠습니다.

1. 199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承認의 件(鍾路區廳長 提出)

(14時 57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1항 199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承認의 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행정위원회 玄壽漢 委員長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玄壽漢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현수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5년도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원 여러분 가내에 행운이 합

께 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제5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전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예산 중 삼청공원 테니스장 하수로 암거공사 1억원과 창신동 어린이집 추가공사비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사업비로 계상된 것으로서 우리 주민의 생활체육 향상을 위하여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내용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창신1동 어린이집을 공사하는 안전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9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審 査 報 告 書

1995. 11. 2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経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13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提案説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오병환, 시민국장 김현식)

가. 제안이유

추가경정 재원은 서울시로부터 추가배분 받은 보통교부금 가내시액인 24억 3,100만

원 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인 1억 9,100만원을 주민편익 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급한 사업 등 주민복지사업에 전액 반영함.

나. 주요골자

- 삼청공원 테니스장 하수로 암거공사비 1억원
- 창신어린이집 설계변경으로 추가소요예산 9,100만원

3. 専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 총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액	금 회 추 가 경 정			확정예산	증 가 율
		소 계	간주처리	추가재원		
계	107,279	2,523		2,431	109,802	2.3
일 반 회 계	93,932	2,431		2,431	96,363	2.6
특 별 회 계	13,347	92	92		12,439	0.7
의 료 보 호	925	92	92		1,017	10.0
새 마 을	165				165	
주 차 장	12,257				12,257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 조정교부금	시 비 보 조 금	세 외 수 입
일 반 회 계	2,431		
특 별 회 계		92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 자 재 원	진 료 비 보 전	일 반 경 상 비
일 반 회 계	2,431		
특 별 회 계		9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추 경 재 원	시 민 행 정 위 원 회 소 관	
		투 자 재 원	진 료 비 보 전
일 반 회 계	2,431	191	
특 별 회 계	92		92
계	2,523	191	92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회추경	기정예산	총 예 산
일 반 회 계	삼청공원 테니스장하수로 암거	100	100	200
	창신1동 어린이집 추가공사비	91	915	1,006
특 별 회 계	의료비보전	91	924	1,016
계		191		

○ 참고사항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4조〉

① 서울특별시장은 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당해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합산액(이하 “조정세”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세 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5조〉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년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6조 (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보통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 (특별교부금의 교부)〉

특별교부금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1. 재해로 인한 특별 재정 수요
2. 자치구의 청사, 공공복지시설의 긴급한 보수, 복구
3. 기타 재정수입의 감소요인이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검토의견

- 금번 추경재원은 전액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도 전액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실행 예산이라 사료되고
-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용도가 지정되어 배시되는 시비보조금으로 이는 예산 총칙 규정에 의하여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되는 예산이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로 계상된 것으로써
- 사업비의 추가 소요액의 적정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박종식, 오금남, 정창희, 안철주, 박문배, 홍승태, 정태순 위원)

- 테니스장 하수로 암거공사 예산편성 기준은?
- 본 예산편성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편성하기 바람.
- 지반 지하침수 예산으로 지상층을 증축할 용의는?
- 본 예산과 추가예산의 집행 방법은?
- 설계변경 날짜와 현재 공사진행 사항은?
- 가정복지과에 전문직(기술직)이 있는지?
- 건설업체는?
- 1억원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

(답변자 : 총무국장 오병한, 시민국장 김현식)

- 토목과에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 지상으로 할 시 수용인원 부족과 건축기술상 부득이 이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 예산회계법에 의거 집행하겠습니다.
- 착공은 8월 22일이고, 현재 지하굴착공사 중입니다.
- 현재는 없습니다.
- 상호종합건설입니다.
- 용역결과 지하노후하수관이 발견되어 새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5. 討論 要旨 : 없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해당없음

○議長 金憲中 市民行政委員會 玄壽漢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都市建設委員會 李炯述 委員長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長 李炯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형술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현중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는 '95년 11월1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진지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중 92%인 22억4,000만원 전액이 계속사업인 도로사업에 투자하는 안건으로 필운동~옥인동 도로개설공사 덕성여대~와룡동 15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안국동 104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한 편성으로 바람직하나 시기적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또한 공사로 인한 일부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를 심도있게 질문하였으며 구청관계관들의 성실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혈세로 구성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9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審 査 報 告 書

1995. 11. 2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도시건설종로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13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오종석)

가. 제안이유

추가경정 재원은 서울시로부터 추가배분 받은 보통교부금 가내시액인 24억 3,100만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인 22억 4,000만원을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업시행 중 일부 연차사업의 투자비 부족으로 인한 민원불편 사항을 조속 해결코자 편성한 것임.

나. 주요골자

- 필운동~옥인동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1억 9,000만원
- 덕성여대~와룡동 150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7억원
- 안국동 104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억 5,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계속)

3. 専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윤주채)

○ 총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B+C)	당초예산액 (B)	추가경정예산액			증가율 (E/B)
			소 계 (C=D+E)	간주처리 (D)	금회추경 (E)	
합 계	109,802	107,279	2,523	92	2,431	2.3%
일반회계	96,363	93,932	2,431	—	2,431	2.6%
특별회계	13,439	13,347	92	92	—	0.7%
의료보호	1,017	925	92	92	—	10.0%
새마을	165	165	—	—	—	
주차장	12,257	12,257	—	—	—	

○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세입]

(단위: 백만원)

합 계	일반 조정교부금	보조금	세외수입
2,431	2,431	0	0

[세출]

(단위: 백만원)

합 계	경상비	투자사업비
2,431	0	2,431

[특별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없음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내역

— 도로 건설 2,240만원(필운동→옥인동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

○ 검토의견

— 세입: 세입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이나 '95년도 보통교부금 추가 배정 전액으로 문제점 없음

— 세출: 세입 총액 24억 3,100만원 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1억 9,100만원을 제외한 22억 4,000만원(92%) 전액을 도로건설, 계속사업에 투자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편성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시기적으로 보아 내년 예산 집행 가능성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이병문, 이만로, 선상선, 강래규, 김이환 위원)

○ 안국동 104번지 도로개설공사 시 윤보선대통령 주변보상에 대한 현황은?

○ 윤보선 대통령 주변이 몇평이나 됩니까?

○ 필운동~옥인동, 덕성여대~와룡동 구간에 대한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 주민들이 보상금이 적다는데 이유는?

○ 연말이 가까운데 사용이 가능한가?

○ 도로개설시 차투리 땅에 대한 보상기준은?

○ 건축허가는 30평 이상이어야 하는데 15평에서 30평이 될 때는 가능한지요?

○ 창신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1, 2차 지급 후 미부분에 대한 대책은?

(답변자: 건설국장 오중석)

○ 문화재 주변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 토지 159.8㎡ 건물 2동 45.8㎡입니다.

○ 문제는 없으며 일부분은 협의가 안돼 강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2개의 감정원에 의뢰, 산정한 것입니다.

○ 인가고시와 감정평가 의뢰 원인행위를 연

말연안에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 가능합니다.

○ 내년도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바 공사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5. 討論 要旨: 없음

6. 審査結果: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해당없음

○議長 金憲中 都市建設委員會 李炯述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199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承認의 件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199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承認의 件은 시민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年度 行政事務監事 計劃書 承認의 件 (委員長 提出)

(15時 05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2항 1995年度 行政事務監事 計劃書 承認의 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運營委員會 羅在岩 委員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羅在岩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재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매일 실시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진지하게 안전을 처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5회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95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각종행사 및 세미나를 어떻게 추진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가오는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구정 질문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또한 업무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서 우리 의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95년 11월 29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관은 운영위원회 위원 9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선서 및 업무의 현황을 청취한 후 서류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5年度行政事務監事計劃(案)

1. 監査의 目的

- 종로구의회 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1996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국 운영 도모

2. 監査期間: 1995. 11. 29. 10:00(1일)

3. 監査實施 對象機關: 종로구의회 사무국

4. 監査班 編成

- 위 원 장: 나재암
- 간 사: 안철주
- 감사위원: 이병문, 현수한, 이형술, 정창희, 박종식, 김이환, 박문배

5. 監査日程 및 場所

- 감사일시 : 1995. 11. 29. 10:00(1일)
- 감사장소 : 종로구의회 소회의실

6. 監査方法

가.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 현지확인 또는 보고, 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

나. 주요 감사내용

- 1995년도 예산집행 사항
- 의안처리현황 및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
- 회의록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정활동 지원사항
-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감사진행순서

- 개회선포 및 위원장 인사
- 의사일정 상정
- 간부소개 및 선거
- 업무현황 청취
- 보고 및 질의 답변
-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자료 및 관계인의 출석요구

- 보고 요구
 - 보고사항 : 업무현황
 - 보고일시 : 1995. 11. 29
 - 보고장소 : 감사장
- 서류(자료)제출요구
 - 서류(자료)제출 요구사항
 - 별도 목록에 의함
 - 제출일시 : 1995. 11. 25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사무국
 - 제출부수 : 20부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일시 : 1995. 11. 29
 -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 출석장소 : 감사장

7. 監査의 限界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간여 금지
-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에 따른 취득사항 누설 금지

8. 行政事項

가. 보고·서류의 제출 요구

- 보고·서류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 확정후 각 감사위원의 요구사항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정리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위원장은 의결을 거친 보고·서류의 제출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요구(늦어도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

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사무국장

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는 별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채택
- 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
 -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 감사실시내용
 - 감사결과 처리의견 :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 및 중요 근거서류

○議長 金憲中 運營委員會 羅在岩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市民行政委員會 玄壽漢委員長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玄壽漢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현수한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종로구청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인데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각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현수한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홍기서위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홍승태 부의장님, 안철주위원, 오금남위원, 천상욱위원, 심재득위원, 정태순위원, 정창희위원, 박종식위원, 박문배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국별 간부소개 및 선거, 업무의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청취, 감사 종료순으로 하겠으며 서류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기 제출한 자료로 실시하

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현장확인 사항은 도시건설위원 위원과 함께 10개조로 편성하였고 편성방법은 재선위원과 초선위원, 동부 및 서부로 구분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 종로구청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96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 행정상 미비, 보안사항 등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 유도

2. 監査期間

1995. 11. 27~12. 3(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민국
- 종로구 보건소
- 각 동사무소(21개동)

4. 監査班 編成

- 위 원 장 : 현수한
- 간 사 : 홍기서
- 감사위원 : 안철주, 오금남, 천상욱, 심재득, 박문배, 박종식, 정창희, 홍승태, 정태순

5. 監査日程 및 場所

감 사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위 원 명
1995. 11. 27(월) ~11. 28(화)	각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현장확인
1995. 11. 29(수)	문화공보실 감 사 실 시민봉사실 보 건 소	종 로 구 청 (기획상황실)	
1995. 12. 11(목)	총무국 { 총 무 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여 권 과	종 로 구 청 (기획상황실)	
1995. 12. 1(금)	시민국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 생 과 산 업 과 환 경 과 청 소 과	종 로 구 청 (기획상황실)	
1995. 12. 2(토)	재무국 { 재 무 과 세무관리과 부 과 과 지 적 과	종 로 구 청 (기획상황실)	
1995. 12. 3(일)	시민행정위원회소관	시민행정위원회 회 의 실	감 사 결 과 보 고 서 채 택

6. 監査方法

가.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 현지확인 또는 보고, 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

나. 주요 감사내용

- 1995년도 소관별 주요시책 및 예산집행 사항
- 문화행사·문화재 관리사항 및 자체감사활동 사항
- 각종 민원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과 동행정지도 관련사항
- 국민운동지원,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사항과 비상업무 추진사항
- 1995년도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각종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업무 추진, 부동산중개업의 지도감독사항
- 지적처리 및 민원사항
- 저소득시민의 보호 및 가정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항
- 위생업소의 지도단속 및 상공, 연료, 물가와 환경에 관한 사항
- 쓰레기 및 분뇨의 처리 및 대행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995년도 방역사업등 보건소 운영에 관

한 사항

- 동사무소 주민등록관리 및 민원처리사항

다. 감사진행순서

- 개회선포 및 위원장 인사
- 의사일정 상정
- 소관실, 국별 간부소개 및 선서
- 업무현황 청취
- 보고 및 질의 답변
-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 청취
-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자료 및 관계인의 출석요구

- 보고 요구
 - 보고사항 : 실, 국별 업무현황
 - 보고일시 : 1995. 11. 27~12. 3
(감사일정 참조)
 - 보고장소 : 감사장
- 서류(자료)제출요구
 - 서류(자료)제출 요구사항
별도 목록에 의함
 - 제출일시 : 1995. 11. 25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사무국
 - 제출부수 : 30부
- 현지확인 사항
 - 현지확인장소 : 각 동사무소
 - 현지확인일시 : 1995.11.27~11.28
 - 현지확인반 편성

반별	동 명	위 원 명	편 성 기 준
1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박종식 위원, 나재암 위원	1. 재선대 초선 2. 동부 및 서부 3. 위원회별 안배
2	부암동, 평창동	정창희 위원, 김이환 위원	
3	삼청동, 세종로동	심재득 위원, 강래규 위원	
4	무악동, 교남동	박문배 위원, 김정대 위원	
5	가회동, 종로1, 2	천상욱 위원, 선상선 위원	
6	종로3, 4, 종로5, 6	홍기서 위원, 이만로 위원	
7	이화동, 혜화동	홍승태 위원, 이병문 위원	
8	명륜3가, 창신1동	현수한 위원, 오금남 위원	
9	창신2동, 창신3동	정태순 위원, 이형술 위원	
10	승인1동, 승인2동	안철주 위원, 현효선 위원	

- 현지확인사항 : 구청업무관련사항 및 주민등록관리와 민원처리실태 등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일시 : 1995.11.27~12.3(감사일정 참조)
- 출석공무원 : 소관 국장 및 실·과장
- 출석장소 : 감사장

7. 監査의 限界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간여 금지
-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에 따른 취득사항 누설 금지

8. 行政事項

가. 보고·서류의 제출 요구

- 보고·서류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 확정후 각 감사위원의 요구사항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정리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위원장은 의결을 거친 보고·서류의 제출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요구(늦어도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

나.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요구

-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되도록 통지
- 종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함.

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는 별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채택
- 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
 -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 감사실시 결과(감사반, 대상기관별 일시·장소·방법 등 기타)
 - 주요 감사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 감사결과 처리의견 :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
- 중요 근거서류

○議長 金憲中 市民行政委員會 玄壽漢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都市建設委員會 李炯述委員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長 李炯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형술입니다.

'9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거 '9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작성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을 하였으며 감사의 목적 및 기간, 편성은 시민행정위원회가 작성한 내용과 유사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 종로구청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96년도 예산(안)집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 행정상 미비, 보안사항 등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 유도

2. 監査期間

1995. 11. 27~12. 3(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도시정비국
- 건설국
- 각 동사무소

4. 監査班 編成

- 위 원 장 : 이형술
- 간 사 : 김정대
- 감사위원 : 이병문, 현효선, 이만로, 선상선, 김이환, 강래규, 나재암

5. 監査日程 및 場所

감 사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995. 11. 27(월) ~11. 28(화)	각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현장확인 등
1995. 11. 29(수) ~11. 30(목)	도시정비국	구의회 소회의실	
1995. 12. 1(금) ~12. 2(토)	건설국	구의회 소회의실	
1995. 12. 3(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결과 보고서채택

6. 監査方法

가.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 현지확인 또는 보고, 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

나. 주요 감사내용

- 1995년도 소관별 주요시책 및 예산집행 사항
- 각종 민원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조합 등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 시민아파트 관리 및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업무 추진사항 및 옥외광고물 관리 사항
- 불법주정차 단속, 마을버스운행 등 지역 교통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등 건축행정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 보상업무 추진사항과 가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 주요 도로 및 하수사업 및 수해,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대 조성 및 공원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동사무소 건축관련 민원처리 및 무허가 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 소규모 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다. 감사진행순서

- 개회선포 및 위원장 인사
- 의사일정 상정
- 소관실, 국별 간부소개 및 선서
- 업무현황 청취
- 보고 및 질의 답변
-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

청취

-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자료 및 관계인의 출석요구

- 보고 요구

- 보고사항 : 실, 국별 업무현황
- 보고일시 : 1995. 11. 27~12. 3
(감사일정 참조)

- 보고장소 : 감사장

- 서류(자료)제출요구

- 서류(자료)제출 요구사항
별도 목록에 의함
- 제출일시 : 1995. 11. 25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사무국
- 제출부수 : 30부

- 현지확인 사항

- 현지확인장소 : 각 동사무소
- 현지확인일시 : 1995.11.27~11.28(2일)
- 현지확인반 편성

(「다음 페이지」에 계속)

반별	동 명	위 원 명	편 성 기 준
1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나재암 위원, 박종식 위원	1. 재선대 초선 2. 동부 및 서부 3. 위원회별 안배
2	부암동, 평창동	김이환 위원, 정창희 위원	
3	삼청동, 세종로동	강래규 위원, 심재득 위원	
4	무악동, 교남동	김정대 위원, 박문배 위원	
5	가회동, 종로1, 2	선상선 위원, 천상옥 위원	
6	종로3, 4, 종로5, 6	이만로 위원, 홍기서 위원	
7	이화동, 혜화동	이병문 위원, 홍승태 위원	
8	명륜3가, 창신1동	현수한 위원, 오금남 위원	
9	창신2동, 창신3동	이형술 위원, 정태순 위원	
10	승인1동, 승인2동	현효선 위원, 안철주 위원	

- 현지확인사항 : 소규모복지사업 시행사항 및 민원처리사항 등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일시 : 1995.11.27 ~ 12.3(감사일정 참조)

- 출석공무원 : 소관 국장 및 실, 과장

- 출석장소 : 감사장

7. 監査의 限界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간여 금지

○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에 따른 취득사항 누설 금지

8. 行政事項

가. 보고·서류의 제출 요구

○ 보고·서류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 확정 후 각 감사위원의 요구사항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정리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위원장은 의결을 거친 보고·서류의 제출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요구(늦어도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

나.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요구

○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 되도록 통지

○ 종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함.

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는 별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채택

○ 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

-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 감사실시 결과(감사반, 대상기관별 일시·장소·방법 등 기타)

- 주요 감사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 감사결과 처리의견 :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

- 중요 근거서류

○議長 金憲中 都市建設委員會 李炯述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承認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1995年度 行政事務監事 計劃書 承認의 件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모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憲中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 국장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第54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閉會를 선포합니다.

(15時 15分 散會)

○出席議員 (20人)

金 憲 中	洪 承 台	安 哲 柱
李 炳 文	吳 錦 南	千 相 旭
玄 壽 漢	沈 載 得	鄭 泰 淳
李 炯 述	丁 昌 熙	朴 文 培
洪 起 瑞	康 來 奎	金 以 煥
金 正 大	宣 相 善	玄 孝 善
朴 鍾 植	羅 在 岩	

○出席 關係公務員

總 務 局 長	吳 炳 漢
市 民 局 長	金 賢 植
建 設 局 長	吳 鍾 錫

